

2024. 1. 15. (재정·시행)
2025. 4. 1. (1차개정·시행)



별점위원회 운영지침

2025.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주요 개정내용 >

①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개정 사항 반영(변경, 2024. 7. 1.시행)

-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뿐만아니라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토록 한 사항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부록 반영

② 벌점 심의위원회 분야별 운영 실적에 따른 인력풀 기준 재정비(변경)

- '23년 5월 구성된 벌점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인력풀 재정비 시기 도래
- 최근 2년간 분야별 위원회 개최 및 참여 현황을 고려하여 구성 비율 조정

< '23~'24년 벌점 심의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운영현황 >

※ '24년 12월말기준

구분	소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법률
구성인원(명)	50	15	15	8	4	8
참여인원(명)	32(64%)	13(87.7%)	10(66.6%)	3(37.5%)	0(0%)	6(75%)
참여횟수(회)	-	8회	3회	1회	0회	7회

③ 현장점검 지적(경고) 사항 반복 적발에 따른 벌점 부과 의무화(신설)

-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20대 항목 등 안전·품질·공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시정(경고) 명령 시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One-PMIS를 활용하여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한 벌점관리기준 항목으로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벌점 부과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함

④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지수제 시행에 따른 평가의견서 제출·검토 의무화(신설)

- 부실측정 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안전관리과로부터 안전지수 평가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 진행토록 의무화

⑤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시 안전관리 우수현장 소명기회 부여(신설)

- 안전지수평가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경우 1년동안 벌점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인 벌점 부과위원회 진행 시 당사자가 참석하여 현장여건 등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⑥ 벌점 부과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규정 정비(신설)

- 부실 측정부서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보완·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목 차 -

1.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개요	1
1-1. 수립목적	1
1-2. 벌점제도 및 위원회 운영배경	1
1-3. 관련근거	1
1-4. 관련용어	2
1-5. 추진경과	3
1-6. 본부 벌점제도 운영 관련 절차도	4
2. 벌점의 측정 및 부과 기준	5
2-1. 측정기준	5
2-2. 부과대상	5
2-3. 벌점부과 대상별 측정 항목	5
2-4. 벌점 산정기준	7
2-5. 벌점 적용 및 부과기한	8
2-6. 벌점부과 처분 제외대상	8
3. 본부 벌점위원회 운영기준	9
3-1. 벌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9
3-2. 벌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10
3-3. 벌점 부과 절차 및 방법	12
4. 벌점의 적용 및 관리 기준	21
4-1. 벌점 부과정보 이력 관리 및 공개 기준	21
4-2.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22

5. 행정사항	24
5-1. 적용시점	24
5-2. 재검토기한	24
6. 부 록	25
별첨1. 부실측정 확인서(서식)	25
별첨2. 벌점부과위원회 상정안(서식)	26
별첨3. 안전지수 평가의견서(서식)	29
별첨4.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30
별첨5. 벌점부과위원회 의결서(서식)	31
별첨6. 벌점부과 사전통보서(서식)	32
별첨7. 벌점부과 이의신청서(서식)	33
별첨8. 이의신청 검토의견서(서식)	34
별첨9. 벌점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의견서(서식)	35
별첨10. 벌점심의위원회 상정안(서식)	37
별첨11.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서식)	39
별첨12. 벌점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의견서(서식)	40
별첨13. 벌점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41
별첨14.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서식)	42
별첨15.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서식)	43
별첨16.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청렴서약서(서식)	44
별첨17.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45
별첨18.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 관련 규정	46
별첨19.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48
별첨20.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63

1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개요

제1절 수립목적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 등의 안전, 품질 등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 검토·심의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벌점제도 및 위원회 운영배경

-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벌점제도 운영
 - 1995년부터 제도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 시공·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부실 책임이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인에게 벌점 부과함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2014년부터 벌점제도 운영상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벌점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임
 - 2014년 2월부터 본부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안전점검을 실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벌점 책정을 위해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운영
 - 2021년 1월, 벌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제정으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와 벌점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중임

제3절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등),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부실벌점 위원회 재정비 계획」 (본부장방침, 2023. 3.)
-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본부장방침, 2024. 1.)

제4절 관련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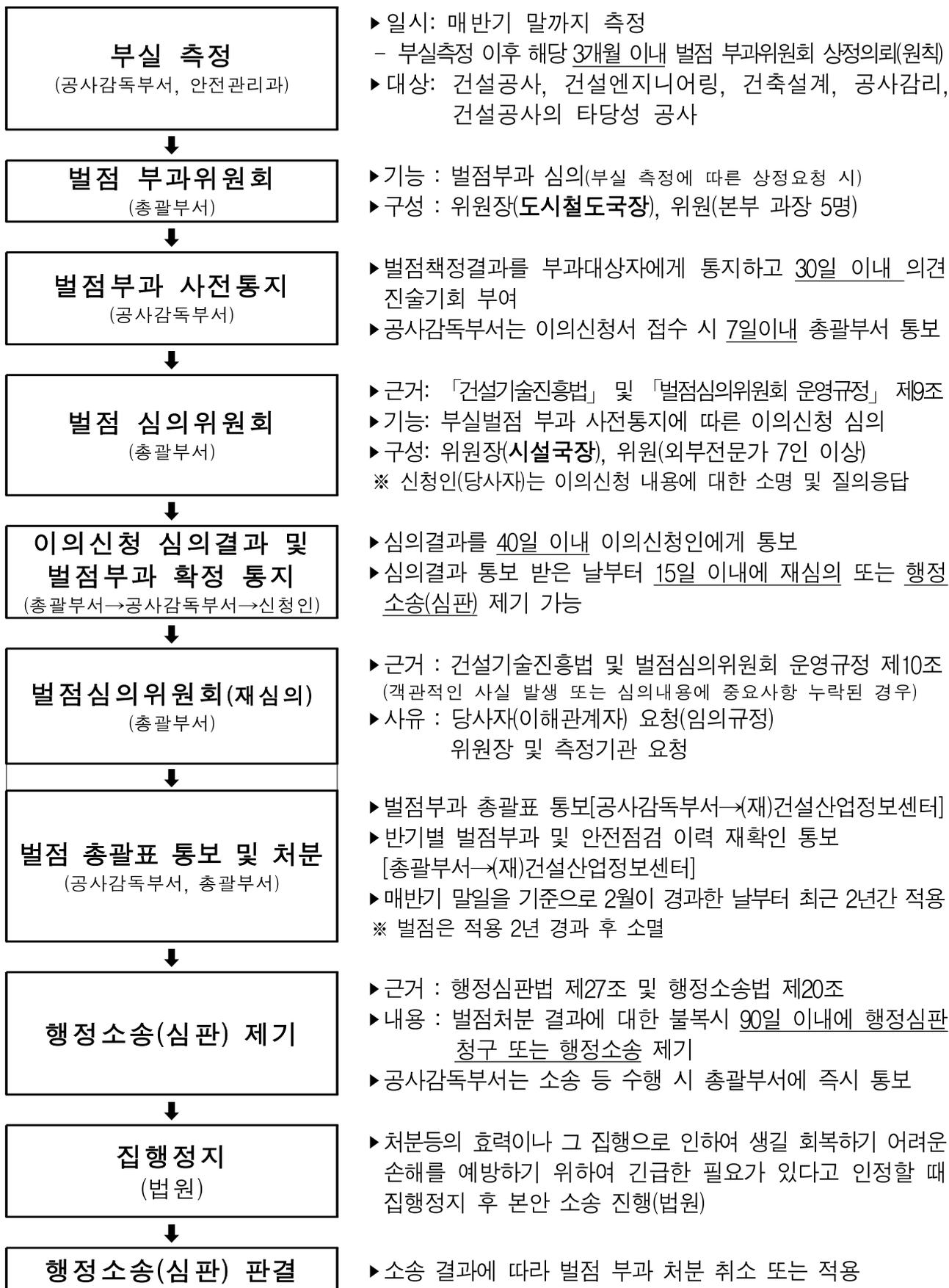
-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함
-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함
-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함
-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단,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함
-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함
-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에 대한 용역을 말함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함

-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함
-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제5절 추진경과

- '95. 1. 5.: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신설[건설기술관리법]
- '14. 2. 24.: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장방침]
 - ▶ 안전점검단 지적사항에 대한 벌점 책정을 위해 벌점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8. 8. 28.: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장방침]
 - ▶ 부서별 운영중인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총무부 통합 운영
- '21. 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 ▶ 벌점 측정기관에 '벌점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벌점관리기준 객관성 강화
- '21. 2. 16.: 벌점 심의절차 개선계획(안)[본부장방침]
 - ▶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하여 벌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벌점부과 이의신청 심의
- '21. 4. 26.: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23. 1. 1.: 합산벌점 제도 시행
- '23. 3. 17.: 부실벌점 위원회 재정비 계획[본부장방침]
- '23. 5. 8.: 외부전문가 인력풀 재정비 완료
 - ▶ 인력풀 구성인원 축소(80명→50명), 법률분야 전문가 추가 구성
- '24. 1. 15.: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 '25. 4. 1.: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시행(1차)

제6절 본부 벌점제도 운영 관련 절차도



2

별점의 측정 및 부과 기준

제1절 측정기준

- 측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따름
- 측정대상: 본부 발주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건축설계·공사감리

제2절 부과대상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부과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단,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분담업체별로 부과

제3절 별점부과 대상별 측정 항목

- 별점은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양벌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별점관리기준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부과 대상별 별점 측정항목 >

①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 토공사의 부실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 배수상태의 불량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시공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계측관리 불량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레미콘 플랜트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 소홀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
-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소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임의 변경 또는 관리 소홀**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시공실태점검 소홀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 하도급 관리 소홀

③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 현장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
-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 부족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설계도서 작성 소홀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부실 발생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는 경우 **파란색** 표기

- 측정기관(발주부서)에서는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별첨1)을 받아 측정기준에서 상기 항목에 따라 정한 벌점 부과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가중 또는 감경을 제한함
 - 단,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부과

- 일부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1~3점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명확히 부과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개정·시행('21. 1. 1.)

제4절 벌점 산정기준

- 벌점 산정방식이 기존 누계 평균벌점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2023. 1. 1.부터 변경됨
- 건설현장 사고·점검이력을 관리하여 벌점 경감기준에 따라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 벌점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

① 합산벌점 산정기준

(※ 2023. 1. 1.부터 적용)

- ▶ 산정방법: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 ÷ 2
 - 반기별 벌점 합계: 반기별 측정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값을 말함
- ▶ 벌점경감: 반기별 무사망사고, 관리우수 현장은 벌점 경감 적용
 - 무사망사고, 관리우수 경감 동시 적용 시 관리우수 경감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벌점이 있는 경우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 기준 적용
 - 단, 사망사고 신고 지연 등 부당 경감 확인 시 다음 반기에 가중

<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

-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업자, 주택 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반기 벌점의 20% 경감
- 연속 무사망사고 시 가중 경감 적용

2반기	3반기	4반기
36%	49%	59%

< 관리우수 경감기준 >

-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고 벌점 미부과 현장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해당 반기 벌점 경감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0.2점	0.5점	1점

② 누계벌점 산정기준

(※ 2023. 1. 1.이전 유효벌점 적용)

- ▶ 산정방법: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 ÷ 2
 - 반기별 벌점 합계: 반기별 측정 벌점에서 점검한 건설 공사 또는 기술 용역의 수를 나눈 값을 말함
- ▶ 벌점경감: 없음

제5절 벌점 적용 및 부과기한

- 벌점적용: 매반기 말일 기준 2개월 지난 후 합산벌점 적용
 - 벌점은 건설기술인 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됨
- 부과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된 벌점만 유효함
 -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 및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1. 1. 1.)

제6절 벌점부과 처분 제외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벌점부과 처분 제외요건 >

-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5호가목1)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
-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본부 벌점위원회 운영기준

제1절 벌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성방법: 각 위원회 회기별 위원 위촉·운영

벌점 부과위원회 (前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부실사항에 대한 발주부서 벌점부과 의뢰 시 운영

- ▶ 성 격: 비법정 위원회 (※ 운영근거: 본부장방침)
- ▶ 기 능: 부실측정 사항에 대한 부과벌점 책정
- ▶ 위원구성: (위원장) 도시철도국장 / (위원) 본부 과장급 5명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의결
 - 본부 과장급 인력풀(50명 내외)에서 위원을 회기별 임의 선정·구성

벌점 심의위원회

벌점부과 사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시 운영

- ▶ 성 격: 법정 위원회(※ 운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의3)
- ▶ 기 능: 처분당사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
 -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가능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심의 실시할 수 있음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 ▶ 위원구성: (위원장) 시설국장 / (위원) 외부전문가 7인 이상
 - 위원장(내부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의결
 - 회기별 구성 시 심의 상정안건 공사의 분야에 따라 외부전문가 인력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현황 >

※ 운영기간: 인력풀 재정비 시점으로부터 2년

구분	소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법률
기존 (23년)	50명(100%)	15명(30.0%)	15명(30.0%)	8명(16.0%)	4명(8.0%)	8명(16.0%)
변경 (25년)	60명(100%)	20명(33.3%)	15명(25.0%)	8명(13.3%)	5명(8.4%)	12명(20.0%)

○ 위원회 임무 및 역할: 부실측정 및 기준항목 등 벌점부과 적정성 검토

- 측정기관이 책정한 부실벌점에 대한 사유·근거 및 적정성 검토
-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근거 검토
- 이의신청의 인용·기각 결정 및 사전통지 처분의 취소·조정 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벌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 위원의 임기: 위촉일로부터 해당 안건 심의 종료·확정 시까지

- 벌점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시 기준과 동일한 위원 구성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 위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 가능함

○ 위원의 자격요건: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자로서 제5조제1항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벌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
(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 부실측정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 등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측정 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측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함

< 벌점 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위원의 청렴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원의 청렴 의무: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따름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함

< 별점 심의위원회 위원 청렴 의무사항 >

-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 누설 금지
- 위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 금지
-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 금지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따름

-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함

< 별점 심의위원회 위원 직무 제척요건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제3절 벌점부과 절차 및 방법

- (공사감독부서) 부실 측정·적발, 위원회 심의 의뢰, 이의신청 접수, 벌점부과 처분·통보
- (안전관리과) 부실사항 측정·적발, 안전점검 이력 관리·통보
안전지수제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운용
- (총괄부서) 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 검토, 벌점이력 시스템관리

< 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 위원회 개최 및 처분 절차 >



① 부실사항 측정 및 적발 : 공사감독부서, 안전관리과

- 부실적발: 정기 또는 불시 현장점검 실시 ⇒ 확인서 징구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의거 건설공사 등 벌점관리기준[별첨19]에 따른 부실사항 적발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이내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게 확인서 징구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하여야 함
 - 안전관리과는 확인서[별첨1] 징구하여 공사감독부서 공문 통보 조치

※ 감사기관 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확인서 징구 불필요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확인거부”로 기재하고 공사관리관 및 담당과장 확인 서명 후 제출

- 현장점검 등 결과에 따른 지적(경고) 사항 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따른 20대 중점관리 항목 등 안전·품질·공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경고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 현장점검 등 결과에 따라 시정(경고) 명령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점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상 이력을 기록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동일한 별점관리기준[별첨19] 항목으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점 부과를 검토하여야 함
- 다만,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내부 준칙에 따른 별도 기준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별점부과 심의의뢰 : 공사감독부서 ⇒ 총괄부서

○ 영 제88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 점검 및 별점 이력 사전 확인

< 별점 심의위원회 위원 직무 제척요건 >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별점책정 의뢰: 적발 후 3개월 이내 별점책정 심의 상정

- **공사감독부서**는 현장점검 확인서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별첨19]에 따른 부실사항 검토방침 수립(국장결재)
- 별점부과가 필요한 경우 부실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점책정을 위한 상정(안) 서식[별첨2]을 작성하여 **총무부**에 공문 제출

※ 다만, 동일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자문 등 추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하여진 기한을 초과하여 상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③ 벌점부과 심의

: 벌점 부과위원회(총괄부서)

- 심의내용: 측정기관 점검확인서 또는 감사기관 처분요구서에 따른 지적사항의 벌점관리기준 적용 및 부과벌점 책정
- 회의운영
 - 공사감독부서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근거 등 적정성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청취 가능
 - 내부위원 중 이해관계 등에 의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경우 제척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부실측정 현장 및 대상자에 대한 점검이력, 지적사항 등 건설사업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안전관리과로부터 안전지수 평가의견서 [별첨3]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함
 - 안전지수평가 우수 현장의 경우에는 선정 후 1년간 처분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여건 등에 관한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신 참석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총무부)에 회의 전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원장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부실 측정부서에서 동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음

< 벌점 부과위원회 진행절차 >



○ **의결방법: 위원장 제외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별점 부과위원회 심의결과 구분 >

- 원안의결: 의뢰부서 부실 측정사항에 따른 별점 부과 동의
- 조건부의결: 별점 부과에 동의하나 추가 행정절차 이행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정: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별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부결(취소): 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 보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의결과 관리: 회의결과는 비공개, 회의록(속기록) 작성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파일을 작성 관리토록 함

④ 별점부과 결과 통보

: 총괄부서 ⇒ 공사감독부서

- 별점 부과위원회 심의결과 및 별점책정 사항 공문 통보[별첨5]

⑤ 별점부과 사전통보

: 공사감독부서 ⇒ 처분당사자

- **별점부과 사전통보: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 **공사감독부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별첨6]을 작성하여 별점책정 심의에 따른 부과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별점 미부과 결정에 따라 경고,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당사자에게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이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 **공사감독부서**는 행정소송 청구 등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별점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처분의 당사자 등은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까지 부실 측정(점검)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⑥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 공사감독부서 ⇒ 총괄부서

- 이의신청 접수: 사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별첨7] 제출
 - 처분당사자는 별첨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불복하는 사유를 밝히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때 또는 별도 행정처분 통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등 재송을 통한 불복절차 진행 가능함
- 이의신청 접수통보: 이의신청 접수 시 7일 이내 통보
 - **공사감독부서**는 별첨부과 처분당사자의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한 검토방침을 수립하고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검토의견서[별첨8]를 작성하여 **총무부**에 공문 제출

⑦ 이의신청 심의 : 별첨 심의위원회(총괄부서)

- 심의내용: 처분당사자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사유·근거를 토대로 별첨 부과의 적정성 심의

-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15일 전 위원 안전공개 및 사전검토 실시**
 - 위원회 개최 15일 전 회의안건 및 이의신청 내용 위원 공개(원칙)하되 현장명, 당사자 등은 비공개로 하고 정보 보안에 유의토록 안내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술·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정보 공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촉 대상 위원들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전일까지 서면 의견서[별첨9]를 제출토록 함
- **회의운영: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위촉대상) 2/3이상 출석 개의**
 -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부실 사실확인 및 별점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별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하여 별점 확정
 - 과반수 이상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논의하고 부결 시 재심의. 2회이상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
 - 부실측정 현장 및 대상자에 대한 점검이력, 지적사항 등 건설사업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안전관리과로부터 안전지수 평가의견서 [별첨3]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신 참석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총무부)에 회의 전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별점 심의위원회 진행절차 >



○ **의결방법: 위원장 제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별점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결과 구분 >

- 기각: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함 → 기존대로 별점 부과
- 조정: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별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취소: 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 보류(부결): 과반수 이상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위원 기피신청: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따름**

- 회의 당일 당사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위원의 기피 신청[별첨17]을 할 수 있음
- 위원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여부를 먼저 의결하여야 함
- 총괄부서는 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해당 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 안내하여야 함

○ **위원 수당지급: 외부 위원은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수당 지급**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지급기준: 사전검토 수당(50,000원), 회의참석 수당(150,000원)

- 사전검토수당은 기술·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참석수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2시간 초과시 참석수당을 추가(50,000원) 지급토록 함

○ **회의결과 관리: 회의결과는 부분공개, 회의록(속기록) 작성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파일을 작성 관리토록 함

⑧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 총괄부서 ⇒ 공사감독부서

- 별점 심의위원회 결과 및 별점책정(조정) 사항 공문 통보
 - **총괄부서**는 별점 심의위원회 의결된 별점책정(조정) 내용, 의결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사감독부서에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⑨ 별점부과 처분 확정·통지 : 공사감독부서 ⇒ 처분당사자

-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 통지
 - **공사감독부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별점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
 - 별점부과 처분내용(심의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처분대상자)에게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재심의 및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
- 재심의 요청: 당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단,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음)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별점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사감독부서에서 동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하여야 함.

⑩ 별점 총괄표 통보 : 공사감독부서, 총괄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원

- 수시통보: 별점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 위탁기관인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별점부과 현황 송부

- **공사감독부서**는 별점 심의위원회 등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점부과 현황을 조속히 송부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별점조회 시 등재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기통보: 반기별 안전관리과 점검결과 및 공사감독부서 별점부과 이력 재확인 후 총괄 현황 통보**

- **총괄부서**는 본부에서 발주·관리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반기별 부실측정 점검 실시하여 현장별 부실 측정(점검) 횟수 및 별점부과 이력을 재확인하고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별점조회시스템 공개사항 및 확인방법 >

- 통보일시: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
 - 통보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38호
 - 통보방법: 문서24를 이용한 전송 또는 공문서 등기우편 송부하거나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팩스 전송
- ※ 별점을 부과하지 않고 영 제88조 제1항 각 호의 점검(부실측정)만 한 경우라도 현장 수는 별점 경감점수에 반영되는 관리우수비율 산정 시 반영되므로 해당 사항을 별지 제37호 서식의 별점총괄표에 기재하여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4 별점의 적용 및 관리 기준

제1절 별점부과 정보이력 관리 및 공개 기준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상 별점부과 정보 등재 관리
 - 총괄부서에서 본부 건설공사로서 별점 확정된 경우 반기별 별점 적용시점 전까지 이력관리(별점관리) 게시판에 일괄 등재·관리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에서 별점부과 업체 정보 공개]
 - 해당 정보는 별점 유효기간(2년) 경과 후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에 업체 및 기술인의 부실사항 반영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이상 장기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ne-PMIS 별점부과 정보이력 관리 및 등재 절차 >



- 국토교통부: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서 위탁 관리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별점 부과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반기를 포함하여 최근 4개 반기에 대한 별점을 누계 관리
 - 업체 등이 부과 받은 합산별점은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

< 별점조회시스템 공개사항 및 확인방법>

- 공개내용: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별점
- 공개일시: 매 반기말 2개월 후(매년 3월 1일, 9월 1일)
- 확인자: 해당 별점 통보자·업체·건설기술인 등 및 발주청
- 확인방법: 공문서 요청 및 별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조회
 - 시스템 사용자 가입 및 전자서명인증서 확인 후 이용

제2절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합산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
1점이상 2점미만	0.2점
2점이상 5점미만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합산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제재기간
벌점이 20점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벌점이 35점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벌점이 5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벌점이 75점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입주자모집시기)

- [별표4] 입주자 모집 시기

☞ 아파트 선 분양 제한

합산별점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10.0 미만 7.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7.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별점 불이익 적용기간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예1) 2021 상반기 부과된 별점은 2021.9.1부터 2023.8월 말까지 적용

예2) 2021 하반기 부과된 별점은 2022.3.1부터 2024.2월 말까지 적용

제1절 적용시점

- 본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제2절 재검토기한

- 본 지침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관계 규정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별첨2

별첨부과위원회 상정안(서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0000. 00. 00. (제 차)	

안 건 명 (HY헤드라인M 24pt 진하게)

(한컴돋움 12pt 진하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첨 부과위원회

(한컴돋움 14pt)

의뢰부서명	00부
의뢰년월일	0000. 00. 00.

대상사업 개요(HY견고딕 17pt)

현 장 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계약기간	(시공업체명) 0000. 00. 00 ~ 0000. 00. 00								
	(감리업체명) 0000. 00. 00 ~ 0000. 00. 00								
	(하도급업체명) 0000. 00. 00 ~ 0000. 00. 00 ※공동이행에 따른 분담비율(필요 시 기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업체</th> <th>B업체</th> <th>C업체</th> </tr> </thead> <tbody> <tr> <td>분담비율</td> <td>00%</td> <td>00%</td> <td>00%</td> </tr> </tbody> </table>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분담비율	00%	00%	00%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분담비율	00%	00%	00%						
공 정 율	00.00%								
기타사항									

상정사유

- (예시1) 0000. 00. 00. 불시안전점검 부실사항 적발에 따른 별점 책정
- (예시2) 0000. 00. 00.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별점 책정

측정내용

- 점검일시(측정일시): 0000. 00. 00.
- 지적사항

- (예시) 000는 「0000 000」 00 의거 0000를 이행하여야 하나 0000. 00. 00. 확인결과 0000 등을 미이행하여 부실사항이 발생됨

□ 벌점부과 내용

부과대상	건설사업자(업체명), 건설기술인(ooo)
부과내용	벌점 0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검토

기준항목	주요 부실내용	부과대상	부과벌점
가. 11)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	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업체명	0점
		기술인명	0점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예시) 000가 000에 따른 000 위반이 발생하는 등 공사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000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벌점 0점 부과하고자 함

- 붙임 1. 지적사항 확인서 또는 처분요구서 1부.
2. 참고자료 각 1부. 끝.

별첨3

안전지수 평가의견서(서식)

안전지수 평가의견서

○ 현장(공사)명 :

평 가 의 견	비 고

2024년 월 일

안전관리과장 : (서명)

별첨4

별첨부과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별첨 부과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심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다음의 제척사유 등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우
 - []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 [] 9.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유 : _____)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심의위원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중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심의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6

별첨부와 사전통보서(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별첨7

별첨부과 이의신청서(서식)

■ 별첨제도 운영 매뉴얼 [붙임③] 서식

이 의 신 청 서

공사(용역)명			
제 출 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해당 기술인등일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input type="checkbox"/>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input type="checkbox"/> 이의제기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관련 증빙서류			

* 확인자는 관련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직위 및 성명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현 장 명	0000 0000 건설공사
신 청 인	(주) 0000 0000 대표
측정부서	00부장:000 ☎0000-0000 0000과장:000 ☎0000 담당:000 ☎0000

□ 벌점부과 내용

벌점 측정기준	대 상		벌 점
가목.11).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사업자	(주) 00	0.0점
	(별점 2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주) 0000000	0.0점
		(주) 0000	0.0점
	건설기술인(000) (주) 00건설 소속 현장대리인		0.0점

※ 벌점 측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 이의신청 내용(요약)

- 안전관리계획을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였음
-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의무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음

□ 주관부서 검토의견

(예시)

- 000는 「0000 000」 00 의거 0000를 이행하여야 하나 0000. 00. 00. 확인결과 0000 등을 미미행하여 부실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벌점 부과 적정함

별첨9

별점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의견서(서식)

〈 유 의 사 항 〉

※ 양별규정 준수 -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5.별점의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기 규정에 따라 별점 부과시 **원칙적으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별점을 부과**해야 합니다.

(예시) 별점 측정기준 “가.1).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를 적용하는 경우

⇒ 업체 1점, 기술인 1점 각각 별점부과

예외적으로 별점 측정기준 나.11), 나.12), 나.17), 다.9)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체 혹은 건설기술인에게만** 별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별점 측정기준 “나.11).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를 적용하는 경우

⇒ 기술인에게만 2점 별점부과

벌점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의견서

안건번호	제0000-00호
벌점부과 내용 (기심의결과)	○ 건설사업자 0점, 건설기술인 0점 ※ 0000년 제0차 부실벌점 부과위원회(0000. 00. 00.)
검토의견	○ (지적사항)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관련 - -
위원 서명	작성일: 0000년 00월 00일 위원명: 000(서명)

별첨10

별점심의위원회 상정안(서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년 월 일	0000. 00. 00. (제 차)

심 의 사 항

안 건 명 (HY헤드라인M 24pt 진하게)

(한컴돋움 12pt 진하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점심의위원회

(한컴돋움 14pt)

이의신청인	000
이의신청일	0000. 00. 00.

안전 번호	제0000-00호	안 건 명	00000 0000 0000 공사
		부과내용 (기 심의내용)	· 건설사업자 0점, 건설기술인 0점 ※ 0000년 제0차 벌점 부과위원회(0000.00.00.)

지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및 작업장 통로 확보에 대해 확인·감독해야 하나,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현장 내 교통안전 신호수 사망 사고가 발생함.
- 특히, 0000년 00월 현장 내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되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미 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필요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별표8)]에 따라 『가.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해당되고 동일한 안전 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벌점 부과

이의신청 내용(요약)

- 안전관리계획을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없으며 절차를 준수하였음
-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의무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음

벌점부과 내용

벌점 측정기준	대 상		벌 점
가목.11).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사업자 (벌점 2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주) 00	0.0점
		(주) 000000	0.0점
		(주) 0000	0.0점
	건설기술인(000) (주) 00건설 소속 현장대리인		0.0점

※ 벌점 측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별첨11

별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서식)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별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회의장소		회의일자 (. . . . ~)
안건번호 및 안건명	(안건번호) 안건명 0000	이의신청자	

측정기관 별점 처분 내용	위원회 심의 주문내용	위원회 세부 심의결과			비고
		기각	취소	조정	
		0명	0명	0명	

별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위원별 심의의견서
------	-----------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별점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 의견서

회의장소		회의일자	. . . (. . . ~ . . .)		
안건번호 및 안건명	(안건번호) 안건명 0000	이의신청자			
측정기관 별점 처분 내용	① 위원 심의결과			위원 심의결과 사유	비 고
	기각	취소	조정		
위원 심의결과 세부사유 (필요시 기재)	이의신청 내용				
	심의결과 세부 사유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

(서명 또는 인)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심의결과는 ①란의 해당되는 곳에 “o”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각”은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4. “취소”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조정”은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별점 책정 항목·점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13

별점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점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회의장소	

출석위원 총 명	성 명	성 명
	(위원장)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안건번호 및 안건명	심의내용	심의결과

특이사항	
------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심의의결서 1부
------	----------

위 촉 장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귀하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별점심의위원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해당안건 심의 종료확정시까지)

0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첨15

별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서식)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 결격사유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필요 시 옆 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결격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제5조제1항제1호)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여부(제5조제1항제2호)	
------	--------------------------------------------------------------------------------------------------------------------------------------------------	--

연구 용역 등 수행 실적

연 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칭)	
	직위	담당업무	책임정도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원명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 령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별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별첨17

별점심의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점심의위원회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심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다음의 제척사유 등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우
 - []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 [] 9.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 _____)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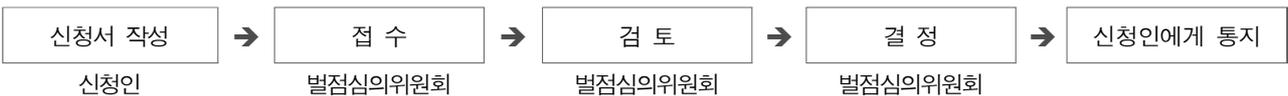
귀중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심의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별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

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별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④ 제3항에 따라 별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별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별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별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별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별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별점을 부과한 사유·근거와 별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별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별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별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첨19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3. 5.>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별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 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 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배수구조물·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타. "건설 기계·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거. "보수·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5호가목1)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벌점 적용기준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합산별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별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5. 별점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p>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p> <p>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p> <p>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p> <p>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m²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3</p> <p>2</p> <p>1</p>
4)	<p>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p> <p>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p> <p>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3</p> <p>2</p> <p>1</p>
5)	<p>배수상태의 불량</p> <p>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 기능이 상실된 경우</p> <p>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 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p> <p>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p>	<p>2</p> <p>1</p> <p>0.5</p>
6)	<p>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p> <p>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p> <p>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2</p> <p>1</p> <p>0.5</p>
7)	<p>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p> <p>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p> <p>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p> <p>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p>	<p>3</p> <p>2</p> <p>1</p>

8)	<p>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p> <p>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p> <p>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p> <p>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p>	
9)	<p>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p> <p>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p> <p>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p>	
10)	<p>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 설치상태의 불량</p> <p>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p> <p>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p>	
11)	<p>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p> <p>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p> <p>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p> <p>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p>	
12)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p> <p>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2</p> <p>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p>	

13)	<p>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p> <p>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맡아보거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p> <p>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p> <p>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p>	<p>3</p> <p>2</p> <p>1</p> <p>0.5</p>
14)	<p>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p> <p>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p> <p>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p> <p>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p>	<p>3</p> <p>2</p> <p>1</p>
15)	<p>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p> <p>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p> <p>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p>	<p>3</p> <p>1</p>
16)	<p>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p> <p>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p> <p>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p>	<p>3</p> <p>2</p> <p>1</p>
17)	<p>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p> <p>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p> <p>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2</p> <p>1</p> <p>0.5</p>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p>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의 소홀</p> <p>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3</p> <p>2</p> <p>1</p> <p>0.5</p>
4)	<p>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p> <p>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 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3</p> <p>2</p>
5)	<p>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p> <p>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p> <p>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p>0.5</p>
6)	<p>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p> <p>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p> <p>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2</p> <p>1</p> <p>0.5</p>

7)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p> <p>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3</p> <p>2</p> <p>1</p> <p>0.5</p>
8)	<p>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p> <p>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p> <p>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p> <p>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p>	<p>2</p> <p>1</p> <p>0.5</p>
9)	<p>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p> <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p>0.5</p>
10)	<p>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p> <p>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11)	<p>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p> <p>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p> <p>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p>	<p>2</p> <p>2</p>
12)	<p>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p> <p>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p> <p>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p>	<p>2</p> <p>1</p>
13)	<p>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p> <p>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2</p> <p>1</p>
14)	<p>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p> <p>가)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나)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15)	<p>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p> <p>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p> <p>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p>	<p>3</p> <p>2</p>

16)	<p>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p> <p>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p> <p>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p>	<p>1</p> <p>0.5</p>
17)	<p>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p> <p>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p> <p>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p>	<p>2</p> <p>1</p>
18)	<p>하도급 관리 소홀</p> <p>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p> <p>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p> <p>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p>	<p>3</p> <p>2</p> <p>1</p>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첨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첨
1)	<p>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p> <p>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p> <p>1</p>

2)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1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발생한 경우	3 2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2 1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삭제 <2024. 3. 5.>	3 2
7)	자재 선정의 잘못(발주청과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했음에도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8)	<p>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p> <p>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p> <p>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3</p> <p>1</p>
9)	<p>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만 해당한다)</p> <p>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p> <p>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p>	<p>2</p> <p>1</p>
10)	<p>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p> <p>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0.5</p>
11)	<p>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p> <p>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3</p> <p>2</p> <p>1</p>
12)	<p>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p>	<p>1</p>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별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별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별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별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별점을 경감한다.

사망사고가 없는 연속반기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별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별점을 경감하며, 경감점수가 부과된 별점(부과된 별점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보다 커서 경감점수가 남은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한정하여 해당 반기의 별점에서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3) 1) 및 2)에 따른 경감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경감을 먼저 적용하고, 2)에 따른 경감 후 남은 별점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라 별점을 경감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별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별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사. 별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별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6. 별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별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별점 등을 공개한다.

별첨20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 1.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호, 2021. 1. 20.,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별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별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은 영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별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별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별점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별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장·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④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 등을 위해 위원 명단의 제공·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심의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및 운영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청렴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별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등) 측정기관은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측정기관이 책정한 별점에 대한 사유·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별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사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 ③ 재심을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관리)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등

제13조(사무처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측정기관의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14조(관련부서 직무)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
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제출
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
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관리
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관리
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2호, 2021. 1.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점 제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 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